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41
----------	-----

2023년 7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형재 의원(찬성의원 45명)
나. 제안일 : 2023년 5월 30일
다. 회부일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 :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형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신설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2023. 6. 8. ~ 6. 1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¹⁾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5조</u>(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생 략) ② 시장은 <u>제1항</u>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제6조</u> ~ <u>제8조</u>(생략)</p>	<p><u>제5조</u>(<u>이산가족의 날</u>)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u>이산가족의 날</u>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u>제6조</u>(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5조 및 제6조제1항</u>----- ----- ----- -----.</p> <p><u>제7조</u> ~ <u>제9조</u>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p>

-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前前)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동 법률개정(’23.3.28.시행) 내용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서울시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1982년부터 자체적으로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으며, 2011년부터 매년 추석 전전날에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음.(참고자료3 참조)

[서울시 거주 이산가족 현황]

- 서울시 거주 이산가족은 10,481명(25.5%)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출처 : 통일부, 2023.5.31.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인원수(명)	10,481	1,769	963	3,332	393	886	337	12,442	2,501	1,382
비율(%)	25.5	4.3	2.3	8.1	1.0	2.2	0.8	30.2	6.1	3.4
구 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해외		계
인원수(명)	1,282	717	610	1,264	1,006	423	171	1,187		41,146
비율(%)	3.1	1.7	1.5	3.1	2.4	1.0	0.4	2.9		100

※ ‘이산가족’ 정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조례 제정('21.12.30.) 이후 이산가족 지원 관련 추진실적]

일시	사업 추진실적
'22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자문회의 개최 - 자문기관 : KBS 다큐멘터리국, 대한적십자
'22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22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예산 편성 -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 1억 5천만원 - 남북 이산가족 인권 등 문제해결 지원 : 2억 3천 2백만원
'22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시장 표창 수여 및 축전 전달 - 행사주최: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23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축하 시장 축전 전달 - 행사주최: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사진전시회 개최(협의 중) - 주최/주관: 서울역사박물관 - 일시/장소: '23.11월 ~ '24.1월(예정)

-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이산가족의 날)제2항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음.
- 다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한 인도적 과제임에도 2018년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산가족 연령은 8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67%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준비와 함께 중앙정부에 촉구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연령별 생존자 현황]

- 출처 : 통일부, 2023.5.31.기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2,807	14,779	7,492	3,817	2,251	41,146
비율(%)	31.1	35.9	18.2	9.3	5.5	10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5조 및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5조</u>(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u>제1항</u>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제6조</u> ~ <u>제8조</u>(생략)</p>	<p><u>제5조</u>(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u>제12조의2</u>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u>제6조</u>(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5조</u> 및 <u>제6조제1항</u>----- ----- ----- -----.</p> <p><u>제7조</u> ~ <u>제9조</u> (현행 <u>제6조</u>부터 <u>제8조</u>까지와 같음)</p>